

기후변화협약 대응 “초보적”

국가 기본방침 마련 및 대체에너지 개발 효율화 추구해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GR의 무역장벽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21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 발효,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협약이 갖는 의미는 단지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류생존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닌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이용패턴을 전환해야 하는 등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각국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을 공표, 세탁기·냉장고·조명·에어콘·TV 등을 절전형 고효율기기로 대체하며 각종 기술지원과 인증업무, 그리고 가전제품의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등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할 전략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대체연료 차량의 구입 의무화, 산업용 모터의 고효율화 등의 실천지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1990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에너지 수급구조개혁 투자 촉진세’를 도입, 에너지 절약 투자를 유도하는 등 관련제도 정비에 나서는 한편,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산업 및 소비부분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위해 주택 단열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제품의 효율표시를 의무화하며 대체연료차 보급 및 철강·석유화학·시멘트·펄프·유리산업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절약 공정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본대응방침조차 마련돼 있지 않으며 선진국의 정보수집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의 정책방향 마련과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와 절전형 기술개발 및 기준마련 등 중장기적인 대책수립과 기술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협약체결국은 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계획을 마련하여 실행 결과를 선진국은 6개월 이내, 개도국은 3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95년 협상당사국회의와 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시점에서 본격적인 압력수단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4/25>